

제2629호
2019. 1. 2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 전화: 3396-495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공 고

제2019-58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 제2019-59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6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58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
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‘조례’로 규정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‘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와 통합 운영함.

2. 주요내용

- ‘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의 명칭을 ‘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’로 변경하고,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의 기능에 ‘투자심사’에 관한 내용 추가
-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제척 규정 위반 시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2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(참조: 기획조정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여관동), 문의전화: 3396-4913, FAX: 3396-8657, 메일: espga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[첨부1]

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은 “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60조 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”를 “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”를 “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재정공시총괄국의 장”을 “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국의 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항제2호 중 “재정분야”를 “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「지방재정법」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 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부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첨부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</p>	<p>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①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① -----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-----.</p>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지방재정공시총괄국의 장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----- ② -----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총괄국 의장----- .</p>
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위촉직 위원 : 민간 전문가,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</p>	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----- -----</p>
<p>제3조(위원회 운영) ②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 1.~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위원회 운영) ②----- 1.~2. (현행과 같음) 3.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② 심의 대상 인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인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.</p>	<p>제7조(간사) ①----- -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부서장-----.</p>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59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1. 폐지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」은 세부조항 대부분이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, 투자심사업무는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」폐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2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(참조: 기획조정국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여관동), 문의전화: 3396-4913, FAX: 3396-8657, 메일: spga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. 끝.

[첨부1]

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